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철어학원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캐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캐더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 5층(논현동)

TEL : 1660 - 0530

FAX : (02) 3288 - 0538

가맹사업본부 1660 - 053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캐더	정철어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 5층(논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04.14	2009.04.14	정학영	02-572-0515	02-3288-0538
	법인등록번호	110111-4078485	사업자등록번호	220-87-79868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시내이사	정학영	정철어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 5층(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감사	정철		정학영	02-572-0515	02-3288-0538
감사	박경순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정철연구소	정철어학원	2025.0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 5층(논현동)	정철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정철어학원	초 중 고, 전연령 브랜드
상 호	정철어학원 00캠퍼스	지역 교육청 인허가 기준 확인 필요
상표(서비스표)	정철어학원	출원번호 : 4119910003828 등록번호 : 4100197340000
그 밖의 영업표지		
그 밖의 영업표지		새로운 로고입니다 상표 등록 진행 중이며 추후 이 로고로 사용 예정입니다. 새로운 로고는 정철/정철연구소가 아닌 주식회사 캐더로 등록 중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2,888,167	365,396	2,522,770	1,924,330	175,862	105,477
2023	3,125,932	438,762	2,687,169	2,419,554	237,642	184,399
2024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024년 현황은 향후 신고 예정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정철어학원	2022		-	-
	2023		-	-
	2024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정학영	사내이사	2009.9 ~ 현재	주식회사 캐더 사내이사	총괄
	정철	감사	2017.9 ~ 현재	주식회사 캐더 감사	교재연구
	박경순	감사	2017.9 ~ 현재	주식회사 캐더 감사	교재연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	2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정철어학원 (상표권)	간판 및 홍보물	1991.08.31 1993.04.22	4119910003828 4100197340000	정철	2033.04.22
	간판 및 홍보물	2005.12.07 2006.09.28	4020050057377 4006801510000	정철	2026.09.28

당사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정철)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정철어학원 가맹사업 현황

1. 정철어학원을 시작한 날 : 2011년 3월 1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2년 7월 1일)

2. 정철어학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제이씨정철	정철어학원	정철, 정학영	2011.03.16 ~ 2014.0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2길 17, 4층(역삼동,대승빌딩)
정철연구소	정철어학원	정철	2014.07.01 ~ 2025.0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 5층(논현동)
주식회사 캐더	정철어학원	정학영	2025.01.24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 5층(논현동)

3. 정철어학원 업종

영업표지	업종	
정철어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초 중 고, 전연령 대상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정철어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정철어학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0					0
2023	0					0
2024	0					0

6. 정철어학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정철어학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년도에 정철어학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캐더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영업 개시일	
보험금액	가입비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정철어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1,000]천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학원을 개원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의 임차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학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료, 영업 시작 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입비	가맹본부	피해보상 보증보험	확정 금액
건물 임차비	건 물 주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인테리어 등 기타비용	협력업체(자체선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귀하는 가맹점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본 가맹본부에 가입비로 오백오십만원(5,500,000원, 부가세포함), 교육비로 오백오십만원 (5,500,000원, 부가세포함) 총 일천백만 원(11,000,000원, 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입비는 계약체결 후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비는 교육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 반환합니다.

2) 본 가맹본부는 보증금 및 담보목적물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금액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치 가맹금의 범위는 가입비와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당사는 예치 가맹금 대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상기와 같이 [W11,000]천원(부가세포함)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학원을 개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실 평수 5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약 140,250 ~ 160,600]				
인테리어	자체선정	약 55,000 *실 평 50평	1,100	협의		인테리어 비용 지역적 상이
간판 등 외장	자체선정	약 2,750 (일반형,0.9m*7m) 약 6,600 (고급형,1.1m*9m)	일반형 55 고급형 132	협의		설치장비 대여 및 노임 별도

학습 교구	자체구매	약 33,000	660	협의		책상, TV, PC 등
냉, 난방 공사	자체선정	약 16,500 (벽걸이형/스탠드형) 약 33,000 (천정형 및 닥트형)	벽걸이형/스탠드형 330 천정형 및 닥트형660	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동력전기공사 별도 및 현장상황에 따른 증감 발생
초기 홍보비	자체선정	약 33,000		협의	홍보물 제작 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학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본부의 지역별 컨설턴트와 가맹점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최종결정은 가맹점 사업자	가. 대학교 밀집지역, 직장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지 나. 학원인허가 및 원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역 다. 실 평수 50평 이상의 건물(지역별 차등) 라. 임대계약 전 '가맹본부'의 승인 필요 마. 가맹본부의 지역별 기초자료를 통한 1차 상담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와 2차 시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가맹 희망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 3차, 4차 추가 시장 조사를 통해 최적의 입지 도출) 바. 지역권은 행정동 기준으로 하며, 초기 설비와 규모를 감안하여 인접 행정동을 포함하여 설정 할 수 있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채용기준	교육 기준
가맹점사업자	*본사의 학원운영방침에 부응하는 교육마인드의 소유자	특별한 기준 없음
강사	* 4년제 대졸 이상, 2년제의 경우 영어 전공자 * 원어민은 E2 비자 발급 가능한 자	국내 강사는 권장사항이며 원어민 강사는 비자발급 필수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정철어학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외부 및 실내공사는 브랜드의 통일성 및 독창성을 위해 당사가 제시한 시안대로 설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 및 관련자료는 제공 드립니다.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시기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회비	가맹본부	1,100	가맹 시작			재계약 비용 없이 월 회비 지속
교육훈련비		100 - 500	교육신청 시 (일정 사전공지)	사전취소	교육 시작 이후 취소	교육 과정에 따른 실비 지급 (신입강사 교육, 기존강사 보수교육)
설명회		300 - 500	설명회 신청	사전취소	2주 이내 취소	본부에 설명회 신청시 거리, 시간,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
자연이자		법률에 따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3년 주기로 가맹계약서 갱신을 하게 함. 재가맹비는 발생하지 않고 가맹점 평가를 통해 갱신여부가 결정되며, 가맹점(가맹점주) 또한 계약갱신 시기에 맞추어 가맹본부에게 개선 요구사항을 요청 할 수 있고 양측은 서로 원만한 합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해야 함.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정철어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본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단, ‘가맹본부’의 승인에 의한 영업양도 시 양수인은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입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종료 즉시 가맹학원의 운영권을 상실하고, 상호 및 상표/서비스표, 학원운영 노하우 및 공급계약프로그램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나. 종료 즉시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및 홍보판촉물 등의 미납대금과 기타 납부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완납해야 합니다.

다.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당사만의 고유의 외장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및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유, 무상 대여품목(샘플교재, 강사용 교재, 프로그램 구동장치, 매뉴얼)을 반환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정철어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해당없음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정철어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물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정철어학원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정철어학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정철어학원 교육프로그램 (교재, 시스템)	왼쪽에 기재된 프로그램 이외의 교재로 강의할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통해 본사 승인을 받아야함	1회 위반 : 1차 서면시정 요구 2회 위반 : 2차 서면시정 요구 ※ 2차 서면시정 요구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가맹 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	

[당사의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외부에서 구입이 불가능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

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등록되지 않은 고객	정철어학원 교육프로그램 (교재, 시스템)	강의 개설 불가	1회 위반 : 1차 서면시정 요구 2회 위반 : 2차 서면시정 요구 ※ 2차 서면시정 요구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가맹 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재들의 대상 연령층 외에 성인반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결정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수강료는 지역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지역별 교육청의 기준을 초과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으며,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중,고,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정철어학원	-

○ 종교에 특화 된 교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영어학원이나 온라인 등 기타 사업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해당 지역의 영업환경 검토 후 설정 행정동으로 구분: 예시-대치동(대치1동,대치2동,대치4동)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정철어학원’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정철어학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정철어학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건
○ 가맹계약서의 가맹금, 월회비, 교재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9조 2항 가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9조 2항 나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29조 2항 다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방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9조 2항 라
○ 정철어학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29조 2항 마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9조 2항 바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사업장의 간판 등의 외관, 운송수단, 교육시설, 강의 프로그램 등 정철어학원 가맹학원으로서의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26조, 7조 1항
○ 당사가 공급하는 교재 이외의 다른 교재를 사용하거나 강의 체계 및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6조, 7조 2항
○ 당사의 ‘공급계약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정보 및 학원 경영 전반의 Know-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26조, 7조 3항
○ 정철어학원 가맹학원의 상표/서비스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사 영업을 할 경우	26조, 7조 4항
○ 강사 교육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강좌, 강의에 투입할 경우	26조, 7조 5항
○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정철어학원 가맹학원의 사업 영역(영어교육사업 등)과 유사한 타 학원 및 기관 등의 교육 사업에 참여하거나 업무 제휴 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경우	26조, 7조 6항
○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할 경우	26조, 7조 7항
○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26조, 7조 8항
○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학원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제 3자에게 이전 또는 전대하거나 질권 등의 담보로 제공할 경우	26조, 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약정일에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	26조, 12조 2항
○ 당사가 지정한 또는 허용한 교재 등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지정치 않은 교재, 부교재 등(그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한다)을 사용할 경우	26조, 15조 1항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 후 월 회비 면제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단, 월 회비 면제기간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4조 1항
○ 당사가 해산으로 소멸한 경우(단, 기업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금치산, 한정치산 등의 선고를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파산선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24조 3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4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사망(법인인 경우 해산)한 경우(단, 가맹점사업자의 직계 가족이나 상속인 중 가맹학원 가입 자격 조건에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4조 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26조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계약조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26조 2항
○ 천재지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6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6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6조 5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6조 6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6조 7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6조 8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6조 9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 시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변경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교육사업 마인드 소유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채권, 채무 정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양수인의 가입비 납입 완료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승인에 의한 영업양도 시 양수인은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입비와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3주 소요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단, 천재지변 등 법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귀하는 당사와의 가맹계약 기간 중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사업영역과 동일한 타 학원 및 기관 등의 교육 사업에 참여하거나 업무제휴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정철어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종업원 수와 영업장 근무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정철어학원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의 광고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브랜드 광고	동의서에 따름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부담비율이나 절차 등은 동의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온라인, 기타 플랫폼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을 위한 활동은 가맹본부에서 진행 할 예정이며 전국단위의 대규모 프로모션, 광고 또는 홍보활동이 발생 할 때 에 가맹사업법에따라 일부 가맹점주와 함께 부담 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에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손해배상)

1. “갑” 및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각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 “갑” 및 “을”은 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예정 성격으로 위약금 금 오천만원(W50,000,000)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3. “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포함)

번호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1	상담신청	- 온라인 및 전화상담 가능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방/방문상담	-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설명(운영팀 배정)	D-90	
3	정보공개서 제공 등	- 2차 상담 및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D-85	
4	상권분석	- 계약 희망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며, 가맹 희망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 건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까지 조사	필요시 실시	
5	최종협의	- 최종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 여부 확정	D-75~72	
6	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D-70	
7	가입비 납부	- 가맹본부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보험증권 수령	D-69	
8	건물계약	- 상권분석에 따른 최적 입지에 건물 계약	D-69	
9	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	- 인테리어는 본사의 CI규정을 엄수하며, 본사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 인테리어 공사는 약 40일~50일 가량 소요 된다	D-68~28	
10	기타설비공사	- 인테리어 기간 동안 기타설비(교구재, 냉난방기, 외부간판, 가전제품, 기타소모품)의 구입을 수급하며, 필요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D-68~20	
11	인력수급 및 교육, 인허가	- 인테리어 기간 동안 인력(교사, 지입차량 등)을 수급하며, 필요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장 및 교사의 교육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필수과정 수료 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 인허가는 해당지역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D-68~10	
12	마케팅/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인테리어 기간 동안 마케팅/홍보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 및 진행방향은 “가맹본부”와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 인테리어 완료 후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진행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진행 합니다.	D-68~10	
13	개원	- 정식 수업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기본으로 하나, “가맹본부”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가맹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정철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원장교육	학원 경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온/오프라인	개원 전	필수 교육
신규강사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인드 교육 등	온/오프라인	신규강사 채용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교육	개별프로그램 집중교육 신교재 교육	온/오프라인	필요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정철어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원장교육	교육 수료 완료 까지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신규강사교육	교육 수료 완료 까지	실비	신입강사
보수교육	필요 시	실비	필요 강사 모두
on-line 교육	필요 시	실비	필요 강사 모두

3. 교육·훈련의 주체

본 교육은 가맹점사업자 본인은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교사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구분	내용
신규원장교육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강사교육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사로 수업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 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대표번호(1660-053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jr.jungchul.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교재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공급하는 교재 등은 시장상황과 영업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